

January 21, 2014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

2013. 7. 30.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약 2주 후인 2014. 1. 31.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4가지인바, (1)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을 마련하고(제2조 제1호 차목), (2)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였으며(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3)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제16조), (4)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제18조).

1.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의 도입(제2조 제1호 차목)

동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부정경쟁행위에 보충적 일반조항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Publicity권 침해가 이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합니다. 종래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만이 아닌 금지청구까지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보충적 일반조항 도입의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도입(동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동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을 신설하였는바,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전자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원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의 법적 근거 마련(동법 제16조)

제16조를 신설하여, 특허청장은 제2조 제1호 가목(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동법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4.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규정 개선(동법 제18조)

종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개정하여,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유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재산상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희 변호사

TEL. 02 316 4025

E-Mail. yhekim@shinkim.com